

주5일 근무제가 도축장과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김 호 길 전무
(사)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1. 서 론

2003년 8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도 주5일제 도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주5일 근무제 시행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르면 2004년 7월부터 월 2회, 2005년 7월부터는 전면 시행하며, 단지 국민생활관련 기관은 당해 기관장이 토요일 서비스 제공에 편의를 고려하여 국민 불편방지를 최소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고, 현재로서는 도축장이나 축산농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문제점

당장 도축장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게 되면,

가. 축산농가에서 출하하는 일수가 4~5일로 줄어 소나 돼지의 출하시기 조절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돼지는 출하시기에 2~3일 출하가 지체되면 5~10kg의 증체로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대규모 양돈장들의 과제중 문제는 물론 토요일 휴무시 브랜드육 가공물량이 감소, 계약농가가 일반 공장으로 출하할 수밖에 없어 기존 브랜드육으로

도축장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게 되면, 축산농가에서 출하하는 일수가 4~5일로 줄어 소나 돼지의 출하시기 조절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돼지는 출하시기에 2~3일 출하가 지체되면 5~10kg의 증체로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또한 도축장에서도 돼지의 경우 금요일에 2일분을 도축하기 위해 계류장 및 예냉실의 부족으로 시설의 추가 증축이 불가피합니다. 육가공장으로서도 가공물량 감소에 따른 원가 상승요인이 작용하며,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의 출하보다 낮은 가격을 받게 될 것이며, 특정일의 물량 급증 또는 급감시 돼지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불안감 조장 가능성도 부작용으로 지적됩니다.

나. 도축장에서도 주5일 작업시 소의 경우 주4일 작업(예냉 후 도체 등급판정으로 인해 연휴가 있을시 출하 기피)으로 인해 적은 양이라도 냉장고 보관을 4일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육질저하와 불필요하게 냉장고를 계속 돌려야 하는 손실을 가져 오게 됩니다.

돼지도 금요일에 2일분을 도축하기 위해 계류장 및 예냉실의 부족으로 시설의 추가 증축이 불가피합니다.

전국의 도축장 가동률이 50%이하이지만 지방 시·군과 관영도축장을 제외하고 대형 도축장은 금요일에 2일분 도축을 하기 위해서 계류장 증축과 예냉실 증축이 불가피합니다.

가뜩이나 도축장이 HACCP시행으로 인해 시설 증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가동률 하락과 규제 강화, 도축수수료의 저가 경쟁으로 수익성과 경영여건의 악화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에서 추가 증축이란 엄두도 못내고 있

는 상황입니다.

다. 육가공장으로서도 가공물량 감소에 따른 원가 상승요인이 작용하며,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육가공장 제비용 중 인건비의 비중이 약 40%로 주5일 근무시 물량이동이 없을 경우 1일 휴무에 1.6%씩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물량이동이 이뤄지더라도 추가인원 및 시설투자가 필요, 역시 원가상승 및 투자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지방 시·군과 관영도축장을 제외하고 대형 도축장은 금요일에 2일분 도축을 하기 위해서 계류장 증축과 예냉실 증축이 불가피하다.

민간기업은 3백~1천인 사업장이 2004년 7월에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5년 7월에는 1백~3백인 사업장, 2006년 7월에는 50~1백인 사업장, 2007년 7월부터는 20~50인 사업장에서 주5일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1년까지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은 대부분 100인 이하의 사업장임으로 2007년부터 주5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WTO체제 하에서 수입축산물이 몰려오고 있는 이 때에 우수하고 안전한 국내 축산물의 발전을 위해 축산물검사관들의 희생의 미덕을 바랍니다.

3. 해결방안

- 도축장에 근무하는 축산물검사관이 반드시 토요휴무제를 지키기 위해서 축산물검사관이 모자란다면, 그 대안으로 도축장에 상주하는 HACCP담당자(대부분 수의사자격증 소유자)가 토요일에 대체할 수 있으며, 이도 어렵다면 공수의사로 대체할 수 없는지?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9조(도축하는 가축의 검사)

①검사원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이하 “자체검사원”이라 한다)은 당해 도축장의 계류시설·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감안하여 가축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자체검사원이 행하는 검사 업무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자체검사원이 축산물 검사를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도계장에서도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 맷는 말

2003년 8월 29일 민간기업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 법률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3백~1천인 사업장이 2004년 7월에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5년 7월에는 1백~3백인 사업장, 2006년 7월에는 50~1백인 사업장, 2007년 7월부터는 20~50인 사업장에서 주5일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1년까지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은 대부분 100인 이하의 사업장임으로 2007년부터 주5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WTO체제 하에서 수입축산물이 몰려오고 있는 이 때에 우수하고 안전한 국내 축산물의 발전을 위해 축산물검사관들의 희생의 미덕을 바랍니다. 양돈

